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과정

가. 발의일자: 2023. 1. 20.

나. 발 의 자: 김종일 의원 외 5명

다. 검토기간: 2023. 1. 25. ~ 1. 31. (7일간)

2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에 맞도록 거리예술 활동 지원 방향 명시(안 제1조)
- 나. 거리예술에 재능나눔 활동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다양한 거리예술 활성화 시책 수립 도모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에 지역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한 효과적인 거리예술 관리사항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거리예술 관람객과 주변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추가(안 제6조)
- 마. 준용조례의 개정 명칭 반영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여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지역 상인회, 거리예술가,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・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사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기획이 아니라,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위한 것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,

-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,
- 안 제6조에 거리예술 활동시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토록 추가 한 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며,
- 그 밖에 준용조례의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고, 조례 취지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다듬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